

의안번호	2200037
의 퇴 인	이재명의원
회 답 일	2024. 6. 25.
추 계 번호	24D0385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전국민에게 25만원~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시나리오별로 각각 12조 8,193억원, 17조 9,471억원(단년도 추계)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년

(단위: 백만원)	
2024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시나리오 1)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지급	12,819,337
(시나리오 2) 전국민에게 1인당 35만원 지급	17,947,071

주: 본 추계 결과는 지급대상자 수 및 1인당 지급금액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지급대상자 수 및 1인당 지급금액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 1. 지급액: 지급대상의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2. 지급시기: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소득 수준별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소득수준별로 지급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시나리오 1)와 3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시나리오 2)로 가정하여 시나리오를 나누어 추계
 - 소득수준에 따라 25만원~35만원의 범위에서 지급대상자별로 차등 지급하는 경우의 재정소요는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 추계액의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자인 ‘전국민’의 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¹⁾상의 수치와 동일하다고 가정
- 현 시점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분 비율을 알기 어려우므로, 2020년과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의 재원분담기준을 준용하여 국가가 80%,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한다고 가정함
 - 2020년과 2021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 비율은 국가가 80%, 지방자치단체가 20%였음²⁾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량 증가로 인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행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발행비용 증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계에서 제외함

1) 행정안전부, 2024년 5월 기준

2) 2020~2021년 긴급재난지원금 비교

구 분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2021년 긴급재난지원금
재원규모(백만원)	12,189,302	8,622,109
지급대상	전국민	소득 하위 80%
지원금 산정기준	가구단위(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지급) 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4인 이상 100만원	인당 지급 1인당 25만원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등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등
재원분담기준	국가 80%, 지방자치단체 20% (서울 70%)	국가 80%, 지방자치단체 20% (서울 70%)

주: 1. 재원규모는 지방비 분담분을 제외한 중앙정부 예산액만 기재함

2.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재원분담기준의 경우 소득 하위 70%는 국고보조율이 80%(서울 70%)이고, 소득 상위 30%의 경우에는 전액 국고부담이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1.7. 227p.를 바탕으로 제작성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³⁾
 - 경기도는 경기도지역화폐센터를 두어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사업을 지원⁴⁾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는 상품권 발행, 시스템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대행사와 계약을 체결⁵⁾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발행방식에 차이가 있음
- 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4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에 따라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별로 각각 12조 8,193억원, 17조 9,471억원으로 추계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지급대상자 수는 2024년 5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수 (51,277,347명)이고, 국가가 80% 지방자치단체가 20%의 재원을 분담한다고 가정
 - (시나리오 1)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12조 8,193억원이 발생하고, 국가는 10조 2,555억원, 지방자치단체는 2조 5,639억원을 분담함
 - (시나리오 2) 전국민에게 1인당 35만원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17조 9,471억원이 발생하고, 추계의 전제에 따라 재원을 분담할 경우 국가는 14조 3,577억원, 지방자치단체는 3조 5,894억원을 분담함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 제8006호)

5)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378호)

[표 2]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구 분		1인당 지급금액(A, 천원)	주민등록 인구(B, 천명)	재정소요 (C=A×B, 백만원)
시나리오 1	합계	250	51,277	12,819,337
	국가(80%)	—	—	10,255,470
	지방자치단체(20%)	—	—	2,563,867
시나리오 2	합계	350	51,277	17,947,071
	국가(80%)	—	—	14,357,657
	지방자치단체(20%)	—	—	3,589,414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지급대상자 수 및 1인당 지급금액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지급대상자 수 및 1인당 지급금액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한예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한예슬	02-6788-4831	yeseulhan@assembly.go.kr